전 속 중 개 계 약 서 ([]매도[]매수[]임대[]임차[]그 밖의 계약())

※ 해당하는 곳의 []란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중개의뢰인(갑)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(을)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.

- 1. 을의 의무사항
- ①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을은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「공인중개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 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,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 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갑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. (공 개 또는 비공개 여부:
- ③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- 2. 갑의 권리 의무 사항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(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)을 지불한다.
- 1.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
- 2.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
- 3.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
- ② 갑은 을이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.
- 3. 유효기간
 -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 - ※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,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.
- 4 중개보수

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()%(또는 원)을 중개보수로 을에게 지급한다. ※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,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.

5. 을의 손해배상 책임

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- 1)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: 차액 환급
- 2)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: 손해액 배상
- 6. 그 밖의 사항
 -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계약자

중개의뢰인 (갑)	주소(체류지)		성명	(서명 또는 인)			
	생년월일		전화번호				
개업 공인중개사 (을)	주소(체류지)		성명 (대표자)	(서명 또는 인)			
	상호(명칭)		등록번호				
	생년월일		전화번호				

※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(매도・임대 등)하려는 경우에는 「I. 권리이전용(매도・임대 등)」에 적고, 권리를 취득 (매수・임차 등)하려는 경우에는 「II. 권리취득용(매수・임차 등)」에 적습니다.

Ⅰ. 권리이전용(매도ㆍ임대 등)								
구분	[] 매도 [] 임대 [] 그 밖의 사항(
소유자 및	성명			생년월일				
등기명의인	주소							
	건축물	소재지		건축연도				
	신축결	면 적 ㎡ 구 조			용 도			
중개대상물의	토지	소재지			지 목			
표시	工小	면 적 ㎡ 지역 • 지구 등		현재 용도				
	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(또는 월임대료ㆍ보증금ㆍ관리비 등)							
권리관계								
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								
중개의뢰 금액	원							
그 밖의 사항								
Ⅱ. 권리취득용(매수 • 임차 등)								
구분	[] 매수 [] 임차 [] 그 밖의 사항(
항목	내용			세부내용				
희망물건의 종류								
취득 희망가격	· 희망가격							
희망 지역								
그 밖의 희망조건								
첨부서류	중개보수 요율표(「공인중개사법」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요율표를 수록합니다) ※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거나, 별지로 첨부합니다.							

유의사항

[개업공인중개사 위법행위 신고안내]

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과다수령 등 위법행위 시 시·군·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, 시·군·구에서는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.